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569 |
|----------|------|

2025년 12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이종태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태 의원)

1. 제안이유

- 위생적인 학교 급식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식생활 교육관을 급식 외에 급식 관련 교육, 체험 활동, 영양 상담 등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신축시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조성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케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점검단 설치 규정 내 학교급식공급업자를 추가(안 제4조)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 활성화 규정(안 제8조)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식생활 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 11조)
-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교급식의 날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569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식생활교육관을 급식 외 교육, 체험활동, 영양상담 등과 같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학교급식점검단의 기능 중 하나인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대상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¹⁾’는 단순히 식재료만을 공급하는 업체로, 종전 식자재 구매, 조리, 배식, 위생관리 등을 포함하여 급식 전체를 책임지는 ‘학교급식공급업자²⁾’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학교급식법」은 3) 교육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⁴⁾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시설’을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급식점검단의 점검 지원 대상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포함하는 것은 법률상 별도 문제가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직속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친환경유통센터와 연계하여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조례상 점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공동구매의 활성화(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는 식자재 구매에 대한 비용 절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2)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4)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교육감에게 공동구매 활성화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 구매 물량을 규모화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학교별 계약 업무의 순환 담당제를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식재료 공동구매를 운영⁵⁾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①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 ② 자치구(급식지원센터) 주관 공동구매⁶⁾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표-1]2024년도 교육지원청별 급식식재료 공동구매 실시 현황’ 및 ‘[표-2]연도별 급식식재료 공동구매 실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지원청별 참여율에 큰 편차가 있으며, 전반적인 참여율도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2024년도 교육지원청별 급식식재료 공동구매 실시 현황

| 교육지원청 | 전체 학교수 | 공동구매 학교수 | | | 공동구매 참여율(%) |
|-----------|--------------|------------|------------|------------|-------------|
| | | 자치구 주관 | 학교 간 | 계 | |
| 동부 | 94 | - | 65 | 65 | 69 |
| 서부 | 135 | 83 | - | 83 | 61 |
| 남부 | 135 | 37 | 3 | 40 | 30 |
| 북부 | 141 | 110 | - | 110 | 78 |
| 중부 | 104 | 9 | - | 9 | 9 |
| 강동송파 | 146 | 3 | 40 | 43 | 29 |
| 강서양천 | 145 | - | - | - | - |
| 강남서초 | 133 | - | - | - | - |
| 동작관악 | 103 | 1 | 4 | 5 | 5 |
| 성동광진 | 83 | 37 | 6 | 43 | 52 |
| 성북강북 | 92 | 54 | 29 | 83 | 90 |
| 합계 | 1,311 | 334 | 147 | 481 | 37 |

[표-2] 연도별 급식식재료 공동구매 실시 현황

| 연도 | 학교급 | 전체학교수 | 공동구매 학교수 | | |
|------|-----|-------|----------|------|-----|
| | | | 자치구 주관 | 학교 간 | 계 |
| 2021 | 초 | 600 | 225 | 93 | 318 |
| | 중 | 378 | 108 | 53 | 161 |

5)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31페이지 (제3장 식재료 구매관리)

6) 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업체를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업체와 개별 학교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연도 | 학교급 | 전체학교수 | 공동구매 학교수 | | |
|----------|--------------|--------------|------------|------------|------------|
| | | | 자치구 주관 | 학교 간 | 계 |
| | 고 | 315 | 67 | 14 | 81 |
| | 특수 | 29 | - | 1 | 1 |
| | 계 | 1,322 | 400 | 161 | 561 |
| 2022 | 초 | 610 | 200 | 100 | 300 |
| | 중 | 375 | 86 | 48 | 134 |
| | 고 | 319 | 45 | 13 | 58 |
| | 특수 | 32 | - | 1 | 1 |
| | 계 | 1,336 | 331 | 162 | 493 |
| 2023 | 초 | 605 | 207 | 95 | 302 |
| | 중 | 375 | 116 | 42 | 158 |
| | 고 | 319 | 64 | 13 | 77 |
| | 특수 | 32 | 2 | 1 | 3 |
| 계 | 1,331 | 389 | 151 | 540 | |
| 2024 | 초 | 604 | 179 | 92 | 271 |
| | 중 | 363 | 102 | 40 | 143 |
| | 고 | 312 | 51 | 13 | 64 |
| | 특수 | 32 | 2 | 2 | 4 |
| | 계 | 1,311 | 334 | 147 | 481 |

○ 이에 따라 안 제8조는 비용 절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의 기능과 효과를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공동구매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행정업무 경감이 아닌 적절한 가격에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재료에 대한 공동구매의 목적을 적정 가격이 아닌 비용 절감 및 행정업무 경감으로만 한정하여 명시할 경우 자칫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현행 조례와 같이 공동구매의 원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역시 비용 절감이 식재료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기본적으로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 라는 구매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중 공동구매단 구성은 강제가 아닌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 그러나 안 제8조의 규정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학교 급식 기본방향’ 중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편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⁷⁾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규정이 자칫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공동구매 단 구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식생활 지도 등(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는 학교장은 식생활교육관(식당)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영양상담,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을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도 이를 교육지원할 수 있

7)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서울시교육청(2025.2.) 31쪽

4.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구매비용 절감과 공동 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단’ 구성 → 학교별 계약 기간 조정 →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도록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은 급식현장을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식당’이라는 명칭과 함께 ‘식생활교육관’을 병기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⁸⁾.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급식현장을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방향⁹⁾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11조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방향은 급식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급식이 이루어지는 식생활교육관(식당)(이하 ‘학생식당’)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그 대상은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생식당은 학생들에게 위생적 급식제공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인바,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으로 식생활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동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8)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 2014년 발행)

○ 급식현장을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변경, 영상장비 등 교육환경 마련(60 페이지)

※ (현행) ‘급식소’, ‘식당’ → (변경) ‘식생활교육관’, ‘식생활관’ 등

○ 불량식품 근절,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123 페이지)

- ‘급식소’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개선

: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자 ‘식당’을 ‘식생활교육관’으로 명칭 변경

9)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서울시교육청(2025.2.) 67쪽

II. 학교급식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3. 추진방향

○ 급식현장을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명칭을 ‘식생활교육관(식생활관)’ 등으로 변경, 영상장비 및 학교정보인프라사업(인터넷)에 포함 등을 통한 온택트 가능 교육환경 구축

더욱이 학생식당을 활용해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교 급식운영과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 위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안 제11조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시 학생식당은 조리실과 인접해 있고 감염병, 식중독 및 이물질 혼합 예방을 위해 매일 청소, 소독하는 시설로, 외부 개방 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4) 학교급식의 날 운영(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는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급식 참관, 시식회 등을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급식실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날(급식 참관, 시식회 등)’ 운영은 조리종사원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동안(2025.4.5.~2025.4.9.) 제출된 총 7건의 의견은 모두 ‘학교급식의 날’ 운영(안 제12조)이 급식실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4] 입법예고 제출의견의 세부 내용 (7건)

| 입법예고 제출의견 세부 내용 |
|--|
| 시식회철회요구. 급식노동자 다 죽는다. 결원대책부터 마련하라 |
| 시식회철회요구. K급식으로 검증된 학교 급식이다. 시식회 철회하라! |
| 시식회철회요구. K급식으로 검증된 학교 급식이다. 시식회 철회하라! |
| 시식회철회요구. K급식으로 검증된 학교 급식이다. 시식회 철회하라! |
| 시식회철회요구. K급식으로 검증된 학교 급식이다. 시식회 철회하라! |
| 시식회철회요구. K급식으로 검증된 학교 급식이다. 시식회 철회하라! |
| 급식노동자 다 죽는다. 학생밥만 해도 헉헉거립니다. 인원부족에 처음 온 사람 가르쳐가면서 정신없는데 일 늘리지 마십시오. |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함께 ‘열린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급식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안 제12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 급식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교육청이 수립하고 있는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취지와 규정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교육청의 지침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데 반해, 동 조례안은 법규로서 법체계상 지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특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더욱이 조례의 규정은 지침과 달리 동일한 재량규정이라 할 지라도 학교장의 재량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가능성 또한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 제12조 신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기타 표기 정정에 대한 검토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의 기호 표기 오류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례의 표기 오류가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상의 표기 오류로, 의회에서 의결된 원안에는 해당 표기에 대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개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오류의 정정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행정적으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현행 조례 기호 표기 오류 내역

| 조항 | 현행 | 개정안 | |
|----------|---------|---------|-----------|
| 안 제3조제2항 | 농?수?축산물 | 농·수·축산물 | 시스템 표기 오류 |
| 안 제4조제1항 | 위생?안전 | 위생·안전 | 시스템 표기 오류 |
| 안 제5조제2항 | 위생?안전 | 위생·안전 | 시스템 표기 오류 |
| 안 제6조제1항 | 위생?안전 | 위생·안전 | 시스템 표기 오류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 원칙”을 규정하고, “공동구매 단 구성”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8조).
- 안 제11조(식생활 지도 등) 및 안 제12조(학교급식의 날 운영)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2569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8조는 문언 해석상 공동구매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 제11조(식생활 지도 등) 및 제12조(학교급식의 날 운영)는 급식운영과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과 급식 위생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 원칙”을 규정하고, “공동구매 단 구성”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8조).
- 안 제11조(식생활 지도 등) 및 안 제12조(학교급식의 날 운영)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식재료”를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료”로, “절감과 공동구매단 구성을 통한”을 “절감,”으로 한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u>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 <p>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u>교육감은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과 공동구매단 구성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top: 20px;"><u>제11조(식생활 지도 등)</u> <u>학교장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관(식당)을 조성하고, 식생활교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및 정보 제공, 영양상담, 급식 관련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이에</u></p> | <p>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u>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u> <u>되, 식재료-----</u> <u>-----절감, -----</u> <u>-----</u> <u>-----</u> <u>-----</u> <u>-----</u> <u>-----</u></p> <p style="margin-top: 20px;"><u><삭 제></u></p>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 data-bbox="220 510 384 555"><신설></p> <p data-bbox="181 1115 576 1227"><u>제12조·제13조</u> (생략)</p> | <p data-bbox="644 315 1007 488"><u>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 data-bbox="608 510 1007 1093"><u>제12조(학교급식의 날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급식 참관, 시식회 등을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u></p> <p data-bbox="608 1115 1007 1294"><u>제13조·제14조</u>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p> | <p data-bbox="1070 510 1241 555"><삭제></p> <p data-bbox="1034 1115 1426 1227"><u>제12조·제13조</u>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급식위생·안전”을 “위생·안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급식위생·안전”을 “학교급식 위생·안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교육감과 <u>학교장</u>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생략)</p> <p>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학교급식 현장 및 <u>학교급식공급업자</u>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안전 점검 지원</p> <p>2. 3. (생략)</p> <p>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u>급식위생·안전 점검</u>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p> <p>② (생략)</p> |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학교의 장</u>(이하 “<u>학교장</u>” 이라 한다)-----</p> <p>-----</p> <p>-----</p> <p>-----</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u>학교급식공급업자</u>, <u>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u> -----</p> <p>----- <u>위생·안전</u> -----</p> <p>-----</p> <p>2.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p> <p>----- <u>학교급식 위생·안전</u>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u>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p>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u>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